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7.12.05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서대문구 홍제동 104-41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7-33-5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<p>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 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『경관법』 제28조 및 『건축법』 제4조에 의한 경관·건축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<p>< 건축 분야 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축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왕산 방향으로의 통경축 확보(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)를 위해 108동의 배치 계획 조정을 검토 바람. ○ 101~102동 저층부 아파트의 중복도에 면한 침실이 먹방이므로 일조, 환기,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평면계획을 재계획하기 바람. ○ 지역 주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고려하여 차량진출입구의 위치 변경을 검토 바람. ○ 근린생활시설의 중앙부분에서 단지로 통하는 외부 보행통로를 확보하기 바람. ○ 의주로 변 단지 진입로에서 단지 내 보행통로까지 옥외 보행축이 연결되도록 자연 순응형 경사를 이용한 보행동선 계획을 검토 바람. ○ 단지 우측 기존 도로와의 원활한 보행 연결을 검토 바람. ○ 종교시설 뒤 6m 도로와 보행동선 연결을 검토 바람. ○ 어린이집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드롭 존을 계획하기 바람.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상층 벽체가 지하에서 없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트랜스퍼 거더가 충분히 안전하도록 검토 바람. ○ 건물단면도(종단면도) 기준으로 건물 길이가 매우 길므로 건조수축 등 균열이 최소화 되도록 적절한 Joint 설치계획을 수립 바람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			

2017.12.05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7.12.05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홍제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서대문구 홍제동 104-41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7-33-5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<p>[심의 내용] 경관 + 건축 심의</p> <p>< 건축 분야 >(계속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(계속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옥상층 계단실/부속실 출입문은 제연성능 및 연돌효과 저감을 위하여 계단방향으로 열리도록 조정 바람. ○ 비상차량 동선계획은 회차가 원활하고 세대 진입이 가능한 위치에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바람. ○ 방재센터에는 외부에서 진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기 바람. ○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재계획을 작성하고,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다음사항을 적용하여 방재계획에 반영하기 바람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날로그형 화재감지기, 호스릴소화전, 주차장 부분을 포함한 습식 스프링클러, 멀티센싱방식의 회전수제어 제연 송풍기, 주차장 환기설비를 보완한 배연계획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7년 개정된 서울시 녹색설계기준의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.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교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원 옆 12m 도로에 면한 차량 진출입구 위치를 공원 좌측 의주로 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. ○ 지하주차장 차량 통로계획을 개선하기 바람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체적인 순환동선 계획, 램프와 통로의 중심선 일치, 통로와 통로가 측면에 평행하게 배치된 불합리한 동선 개선. 끝. 			

2017.12.05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